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대웅, 송달물 등재일시:2022.12.15 16:28, 출력자:하승수, 다운로드일시:2022.12.15 17:0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337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하승수

[redacted]

피고, 항소인 1. 검찰총장

소송수행자 윤성재, 박찬영, 송태환, 김상민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소송수행자 황호석, 김휘연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선고 2019구합86648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2]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검찰총장이 2019.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대웅, 송달물 등재일시:2022.12.15 16:28, 출력자:하승수, 다운로드일시:2022.12.15 17:04

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3] 제1, 2, 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3] 제1, 2, 4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검찰총장이 2019. 10. 30.,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피고 중앙지검장'이라 한다)이 2019. 10. 21. 각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중앙지검장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주위적으로,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검찰총장이 2019. 10. 30., 피고 중앙지검장이 2019. 10. 21. 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대웅, 송달물 등재일시:2022.12.15 16:28, 출력자:하승수, 다운로드일시:2022.12.15 17:0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8.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1. 2017년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2. 위 기간 동안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나. 피고 검찰총장은 2019. 10. 30. 원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정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을 공개하고, 원고의 나머지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피고 중앙지검장은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만을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업무추진비 내역 중 지출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피고들의 위 각 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위와 같은 피고들의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청구거부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의 괄호 안의 '제○호'는 피고들이 공개거부 사유로 삼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해당 호를 의미한다).

피고(처분일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지출증빙서류	집행정보	지출증빙서류	집행정보	지출증빙서류

피고 검찰총장 (2019. 10. 30.)	부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부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공개	비공개 (제4호)
피고 중앙지검장 (2019. 10. 21.)	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비공개 (제4호)	공개	비공개 (제6, 7호)

마. 이에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개를 거부한 정보, 즉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된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원고가 공개청구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정보 중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관한 정보 및 특수활동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는 피고들이 관리·보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별지 1] 제1항 기재 정보 중 특수활동비의 '집행장소,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부분 및 [별지 1] 제2항 기재 정보 중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이하 '특수활동비 개별 사용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들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2) 피고들은 전체 예산 사용내역을 연도별, 사업별로 장부 형태로 정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한 권의 장부에 원고가 청구한 정보와 무관한 수많은 예산 관련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어, 특정 예산 항목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장부를 일일이 개별 검토하여 사업별로 특정업무경비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복사한 후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후 다시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재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을 거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가공·생산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피고들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특수활동비 개별 사용 정보 보유·관리 여부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대웅, 송달물 등재일시:2022.12.15 16:28, 출력자:하승수, 다운로드일시:2022.12.15 17:04

가) 관련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22조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도록 하는 등 지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위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 즉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출납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는 관서운영경비로 '특수활동비'를 규정하고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현금지급의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9호에 따라 '특수활동비 중 수사·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2018년, 2019년의 각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시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 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증거서류로 첨부할 '채권자의 영수증서'[1]에 관하여 ①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1) 감사원규칙인 계산증명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 중 제2호의 '채권자의 영수증서'를 의미한다. 위 조항에 의하면 '채권자의 영수증서'는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는 채권자의 영수증을, ②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사·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 미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그 증거서류로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수령한 현금을 개별적으로 지출한 건에 관한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해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특수활동비에 관하여는 현금 수령일,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 지급사유, 현금 수령인 성명만이 기재된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라는 1개의 문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을 뿐이어서 '집행장소,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에 해당하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2] 그 외에 수령한 현금을 개별적으로 사용한 건에 관한 일시, 금액, 장소 등 지출에 관한 정보와, 해당 지출에 관한 각각의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도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수활동비를 미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고, 이 경우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외에 수령 받은 현금을 개별적으로 지출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별지 1] 기재 정보 중, ① 특수활동비 집행정보 중 집행 건별로, 집행장소, 식사비의 경

있다.

2)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집행장소,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라는 정보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개별적으로 사용한 건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보관·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우 참석자 숫자,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은 경우 현금 수령 이후 개별적으로 지출하여 사용한 건에 관한 일시, 금액, 장소에 해당하는 정보, ② 특수활동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중 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는 피고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 정보 중 특수활동비 개별 사용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보유·관리 여부

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비공개로 제출한 예산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등 자료는 장부 형태로 여러 권으로 나누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항목의 예산 사용 관련 자료가 한 권에 함께 보관·관리되고 있어, 한 권의 장부에 여러 항목의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음은 인정되고, 그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청구를 받은 피고들로서는

---

3) 특수활동비에 관한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가 이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을 뿐,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재분류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 또한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해 피고들이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특정 항목의 예산 집행에 관한 지출요청 건별로 지출결의서, 지출원인행위서, 개개의 집행 내역, 지출증빙서류 등이 함께 분류되어 정리되어 있고 개개의 사용 건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장부의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는 정보 중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를 분류하여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피고들 관련 부서의 업무 전체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보관·관리하고 있는 장부를 검토하여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개개의 최종적인 집행 건별로 정리하고 새로이 편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 따라서 새로운 정보의 가공·생산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검찰총장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비공개 결정 당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추가로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 중앙지검장은 반대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비공개 결정 당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처분사유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추가로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불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번경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석 사실관계가 기본석인 섬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성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비공개 사유로 정한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각 처분사유의 내용 및 요건 또한 다르므로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대웅, 송달물 등재일시:2022.12.15 16:28, 출력자:하승수, 다운로드일시:2022.12.15 17:04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 중 특수활동비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집행방법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도 예외가 인정되는 등 그 집행의 주체 및 방식에서 다른 항목의 예산과 다른 기밀성 및 특수성이 있으므로, 비공개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에 관한 정보 중 '집행명목'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어떤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및 그 비중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

침'이라 한다) 제3장]'로서, 그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하여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집행과정 및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됨에 따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로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만이 보관·관리되고 있을 뿐이고, 그 서류에는 '건별 총 수령금액, 현금수령일, 집행내용, 수령인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와 같이 수령한 현금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사용금액은 나타나 있지 않다.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와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 및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사의 구체적 내용과 규모 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은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특수활동비는 그 자체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활동의 내용과 활동주체, 수사규모 등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의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집행일자(현금수령일), 집행내용(집행명목),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 수령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그중 '집행내용'란에는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 등의 대상이 되는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위 집행내용에 기재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수활동비가 어떤 사건에 관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손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점, '수령인의 성명'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내용' 및 '수령인의 성명'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대상, 정보활동 내용, 활동주체 등이 노출되므로 해당 활동에 대한 기밀유지가 어렵게 된다.

⑷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 수령인의 성명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등 특정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로서, 그 세부적 사항이 포함된 집행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대상 등에 대한 정보 및 정보원이나 정보수집 장소, 접촉경로, 수사기법 및 수사동향, 진행경과, 수사방향 등 중요한 수사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특정 사건에 투입된 검사나 수사관, 수사에 투입된 인력 규모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경비의 일종으로서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 사건 지침 제5장의 5-3 항목)'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집행명목이 공개될 경우 내부적으로 수행 중인 특정 업무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에 필요한 각종 경비, 수사 등 공석 업무 수행 관련 식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사활동비 지출내역에는 사건번호, 사건개요, 정보교류활동 및 사건과 관련된 동향 파악의 개요, 담당 검사나 수사관, 사용인원, 수사 또는 정보수집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거수사비의 경우 검거대상자, 검거장소, 검거일시, 검거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중 '사용자 성명' 및 '집행명목',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가 공개될 경우 현재 수사 중이거나 정보를 수집 중인 사건을 특정하거나 추측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 특정 사안에 투입된 수사 인력 규모를 유추할 수 있어 수사동향 및 경과가 유출될 수 있고, 정보교류활동이나 동향 파악 개요를 통하여 정보수집 경로 등을 유추할 수 있어 수사기법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중 '사용자 성명' 및 '집행명목',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는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⑷ 그러나 위 ⑶항의 정보를 제외한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만으로는 관련된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밀 등을 유추해 내기 어렵고, 특정장소에서 빈번하게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반드시 장소적으로 인접한 특정 대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장소가 공개되더라도 수사대상이나 증거탐색 방법 등 수사기밀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성업무경비 집행성보 중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및 지출증빙서류는 구 성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인 사업추진비와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 관서업무추진비로 구성된다(이 사건 지침 제4장).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검찰총장은 간담회 등 공식행사는 지역 내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 수사경험 및 수사방법 공유 등 수사업무의 연장선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업무에 지장을 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이 간담회 등 공식행사에서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방법 등이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정보의 공개로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서 지출금액과 사용처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 수사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검찰총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적법 여부(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에는 각 간담회 등 공식행사 참석자의 성명 및 직책, 각 카드사용 내역에 관한 카드번호와 승인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생활의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간담회 등 검찰 내 공식행사의 참석자 명단이 참석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정보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지출에 필요한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도 개인식별정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마찬가지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 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의 적법 여부(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 중앙지검장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는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음식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가맹점 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그 음식점 이용을 꺼려함으로써 해당 음식점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경영·영업상 비밀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중앙지검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검찰총장과 피고 중앙지검장의 각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정보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에 관하여 위 각 피고별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범위가 달라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그 처분 당시 거부사유로 들었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거부사유가 인정되는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이 있는 반면, 피고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 당시에는 거부사유로 들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거부사유로 추가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거부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결과이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이병희

판사 정수진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대웅, 송달물 등재일시:2022.12.15 16:28, 출력자:하승수, 다운로드일시:2022.12.15 17:04

[별지 1] 목 록

1.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2. 위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대웅, 송달물 등재일시:2022.12.15 16:28, 출력자:하승수, 다운로드일시:2022.12.15 17:04

[별지 2] 목 록

1.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중 집행건별로, 집행장소,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은 경우 현금 수령 이후 이를 개별적으로 지출한 건에 관한 지출일자, 지출장소,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정보

2. 위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중 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 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대웅, 송달물 등재일시:2022.12.15 16:28, 출력자:하승수, 다운로드일시:2022.12.15 17:04

[별지 3] 목 록

1.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함), 특수활동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집행내용(집행명목), 수령인 성명은 제외]
2. 위 기간 동안 지출한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에 한함), 특정업무경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사용자 성명, 집행명목,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는 제외)
3. 위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위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중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끝.

[별지 4] 관계 법령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 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 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외딴곳·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 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 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수활동비 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특수활동비 중 수사·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3. 특수활동비(230목)

3-1. 적용범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에 따

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계산증명규칙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2. 채권자의 영수증서(격지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영수증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의 대체필통지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다만,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

▣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제2조(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특수활동비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을 구비한다.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구비한다.

제3조(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거서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고, 이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빙,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끝.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대웅, 송달물 등재일시:2022.12.15 16:28, 출력자:하승수, 다운로드일시:2022.12.15 17:04

정본입니다.

2022. 12. 15.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서행수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